

# 하남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

발의자 : 정병용 의원

제출일 : 2025. 10.

## 1. 제안이유

- 가.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발달장애인이 사회 활동 중 예기치 않게 타인에게 신체적·재산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·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
- 나. 보험료를 지원하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유로운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보험 가입 및 지원 근거 마련 (안 제3조, 제5조)
- 다. 보험의 보장내용 규정 (안 제6조)
- 라. 보험금 청구 절차 및 지급 제외 대상 안내 (안 제7조, 제8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한중수)

-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권익 보호와 가족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,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며,

계약·청구·지급 절차를 체계화하여 행정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검토 결과,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됨

■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5.10.2.] [법률 제20880호, 2025.4.1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**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**

② **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,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**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⑤ **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.**